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전체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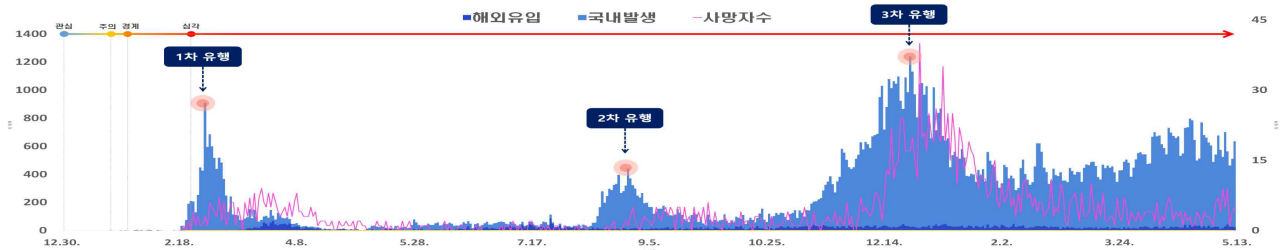
2021. 6.

보건복지부

I. 검토배경

□ 3차례의 유행의 정점을 꺾고, 방역체계는 비교적 선방

- 고강도 방역조치 및 국민의 참여 등으로 3차례의 유행 감소세
→ 유행 지속으로 봉쇄조치*를 추진하는 외국에 비해 매우 선방
- * 일본 수도권 긴급사태 발령(1.8일~), 영국 전면 봉쇄(1.5일~), 프랑스 3차 봉쇄 검토 등



- 병상부족 문제는 긴급 병상확충 노력(20.12.13~)으로 해소(1.3~, 대기 0명)
* 중환자병상 가동률 : (12.1주) 78% (12.2~1.3주) 60% 수준 (1.4주~) 50% 미만

□ 3차 유행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

- 유행이 반복될수록 특정 지역·집단중심의 감염에서 전국단위 소규모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변화
- * (1차유행) 인천지 집단감염, (2차유행) 서울사랑교회 등 수도권 중심 감염
(3차유행) 전국적 소규모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

□ 서민경제 피해·방역 피로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시설 중심의 방역조치는 감염 확산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누적 →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위험도 감소 고려

-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 완료 및 일반 국민 대상 접종 시작에 따라 위험도 감소를 고려한 거리두기 체계 필요성 대두

☞ 3차 유행시의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II. 논의 경과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 추진

* '21.2.2(화), 2.9(화) 2차례 공개 토론회 진행

- (개편방향) 현행 거리두기는 '규제'중심으로, 이제는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체계 개편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소통 강화 필요
- (손실보상)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 총리님 주재 전문가 간담회

* '21.2.23(화)

- (방역체계) 자율과 책임 방역 실행을 위해 보다 정밀한 위험요인 분석과 이해관계자 소통이 필요하며, 방역대응 역량 강화도 필요
- (인센티브) 현장에 대한 지원 및 방역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하며, 단계별 손실보상을 연계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 필요

□ 생활방역위원회, 관계부처·지자체 회의 등 실시

* '21.2.22(수), 3.4(목), 3.22(월) 생활방역위원회,
2.23(화), 3.4(목), 3.23(화) 관계 부처·지자체 등

- (생방위) 자율과 책임 기반의 개편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의료역량 한계를 고려한 전환기준 마련과 관계 부처 역할 구체화 필요
- (관계부처·지자체)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하는 공통수칙, 시설별 추가수칙 마련, 단계별 방역관리 조치내용(운영제한, 이용인원 제한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방역조치 위반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동의
- (사업장 방역관련 논의) 콜센터 등 감염취약 사업장 타겟 관리, 외국인 밀집 기숙시설에 대한 대책 필요성 제기

□ **복지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

* '21.2.18(목), 3.4(목) 2차례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 실시

- (사적모임) 방역 대응에서의 효과성 인정하며, 단계별 적용 기준 및 국민 피로도를 함께 고려하여 마련 필요
- (21시 운영제한) 방역수칙 강화하여 위험도를 낮추는 실질적 조치가 전제되면 운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논의 중
- (보상기준) 개편(안)은 집합금지 등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손실보상 또는 지원금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며, 입법권 검토 필요

□ **공청회 실시** * '21.3.5(금)

- (역량 강화) 검사양성률과 백신접종을 고려한 단계 기준 마련, 검사능력 및 역학·의료역량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전환 필요
- (거버넌스) 업체 종사자가 방역 주체로 시설방역수칙을 제시하고 지속 협의하는 거버넌스 형성 필요
- (경제피해 최소화) 개인 활동 관리는 위험시설 환경개선과 병행 필요하며, 관리 가능한 시설에 대한 자율 강화

□ **관련 협회·단체 릴레이 간담회**

- (1차협의) 총 49개 협회와 19회 간담회 진행(2.3.~2.26.)하며, 기본수칙 및 운영시간, 이용인원 제한 등 단계별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 (자율·책임) 기본수칙 등 방향성은 동의하나, 주로 운영시간·이용인원 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으며, 기본수칙을 강화하는 대신 방역 조치 완화를 제안하는 등 이견 조율
- (2차협의) 총 49개 협회 11회 간담회 진행(5.17.~5.31.)하여 개편안 주요 내용 및 단계별 방역수칙 최종 협의 완료

* 다만, 접종 완료한 종교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논의는 미해결 쟁점

< 개편안 관련 단체·협회 릴레이 간담회 일정 >

5월												
17 (월)	18 (화)	19 (수)	20 (목)	21 (금)	22/23 (토/일)	24 (월)	25 (화)	26 (수)	27 (목)	28 (금)	29/30 (토/일)	31 (월)
대중 음악 출발점	학원 · PC방		음식점 ·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 종교 시설		체육 시설				프로 스포츠		영화관 · 공연장

□ 일부 지역 개편안 시범적용 실시

○ (경북) 경상북도 16개 시·군*(4.26.~)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세 및 유행의 안정적 관리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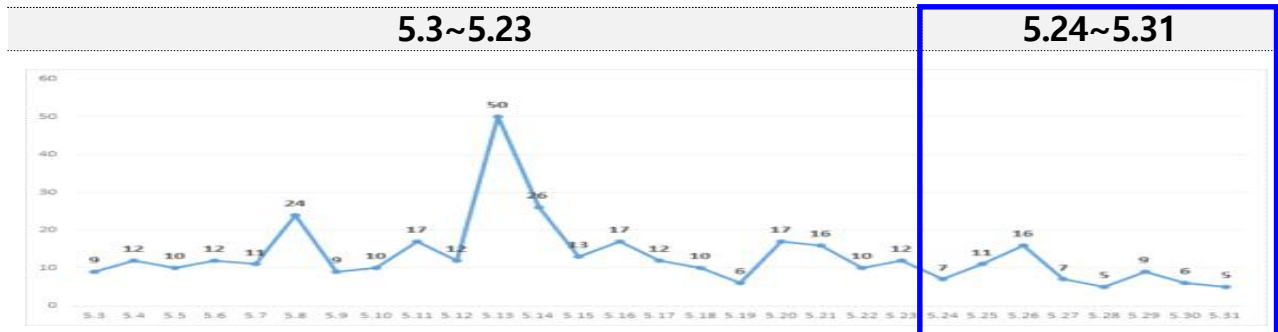
- 지속적 방역 관리 하에 1단계 시범적용에 따른 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전남) 전라남도 전체(5.3.~)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 중이며, 일부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유행의 안정적 통제·관리

- 사적모임 6명 제한*, 종교시설 좌석 수 30% 이내 참여 등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4명으로 제한

< 전남 5월 확진자 현황 >



○ (경남) 경상남도 10개 군*(6.7.~) 지역 대상 개편안 시범적용(1단계, 창녕군 2단계)하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예방 등을 위해 일부 방역조치 강화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단계 조치), 유흥시설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2단계 조치) 등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 (강원) 인구 10만 이하 15개 시·군 대상 1단계 적용(6.14.~)하며,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하여 실시

* (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경과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으로 정밀한 방역체계 구축

-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의 명확화·구체화를 위해 3단계 체계* 마련('20.6월)

*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발생 수준(1→2단계), 급격한 대규모 확산(2→3단계)

-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기준 상향 및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며,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 설계(‘20.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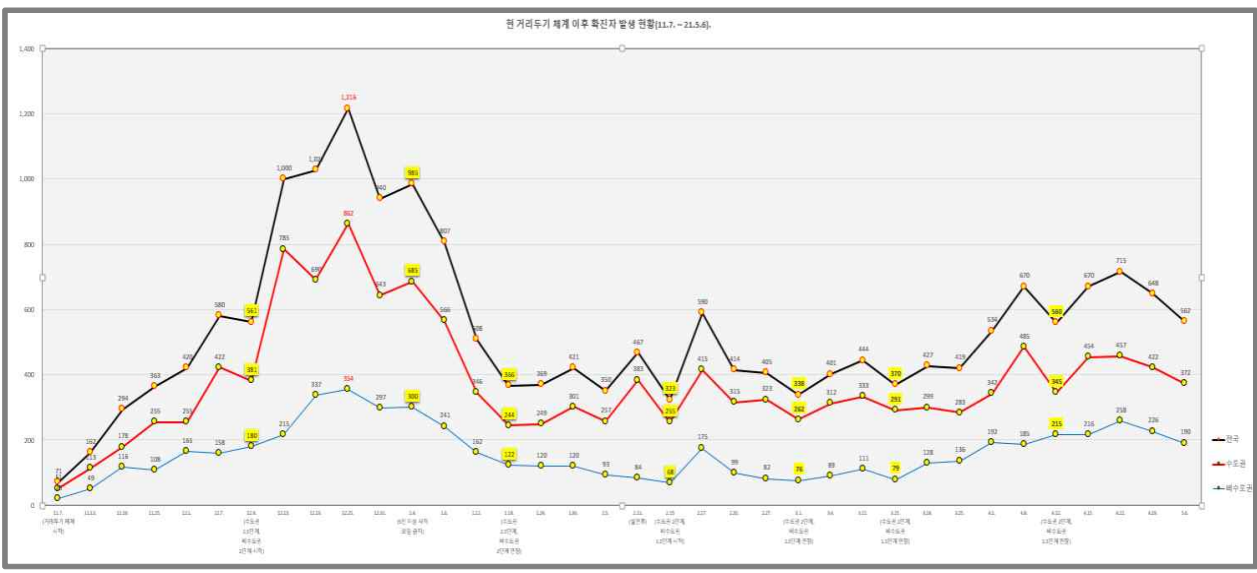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 감염 확산의 억제

- 감염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일평균 환자 천명 대의 3차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

< '20.11월~'21.5월 권역별 주간 확진자 현황 >



III.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문제점

□ 지나치게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

- (불명확한 메시지)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하나, 0.5단계 사이의 위협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

* 단계 상향에 따른 의미 및 조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음

- 기준에 따른 단계 조정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더해져 단계에 따른 메시지가 혼재

< 현 거리두기 단계의 체계의 핵심메시지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행 시작 ■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행 급속 전파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유행 확산 ■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최대한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 대유행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며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 (과소한 기준) 그간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 되었으나, 현 격상 기준은 2차 유행 수준에 맞추어 기준이 과소하다는 지적

- 주요 외국은 방역 조치 강화 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은 보수적인 편

<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관련 해외 사례 >

- ▶ (독일)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우리나라 기준 전국 25만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지역은 10명 이상 모임 금지(10.14~) →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35명 이하로 억제 시 완화 예정
- ▶ (영국) 지역별 3단계 대응 체계 발표 (현재 일일 2만명 이상 발생 중)
 - (보통) 현재 인구 10만명당 10~100명, 6명 이상 모임 금지, 식당 등 10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등
 - (높음) 현재 인구 10만명당 100~400명대, 6명 이상 실외 모임 금지, 실내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만남 금지 등
 - (매우 높음) 현재 인구 10만명당 500~600명대의 확진자 발생 중인 리버풀 지역, 실내·외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만남 금지, 식사를 판매하지 않는 술집 운영 중단,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 권고

- 중증환자 전담병상 782개 확보 중으로, 매일 약 1,100명 확진자 발생 수준까지 감당 가능

* 일평균 확진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0일로 추산

- 중증환자 병상 여력에 따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를 재산정하여 단계 격상 기준을 조정할 필요

< 현재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핵심 지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예방접종) 6월말 고령층 대상 접종 완료,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하지만,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부재

□ 감염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 미흡

- (소규모·확진자 접촉) 3차 유행은 전국적 소규모 감염 발생이 지속되어,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1·2차 유행과 차이 발생
- 특히, 12월 이후 다중시설 집단감염보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활동 관련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월별 감염경로의 변화 >



- (활동규제 부족)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일부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도입하였으나, 규모가 큰 행사만 제약되는 수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1.1.4~) 및 모임·행사 50인 인원 제한 등이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
- (해외사례) 해외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의 인원제한, △비필수적 외출의 제한, △도시·국가간 이동제한 등의 다양한 행위 규제 중

< 행위 규제 해외 사례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공통) 공공장소 등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화(위반 시 벌금)
- **모임 인원 제한**
 - ▶ 미국 : (비거주지 모임) 25인 → 10인 → 금지, (거주지 모임) 10인 → 금지
- **외출·이동 제한**
 - ▶ (공통) 직장, 학교, 병원 등 필수적 행위 외 외출 및 주(州)·국가간 이동제한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피해 누적

- (위험도 평가 신뢰도 하락) 유사 업종 간 운영제한 조치의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업종별 위험도 평가의 근거 및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
 - * 콜라텍, 무도장은 다수가 모여 스포츠댄스를 춘다는 것에는 유사하나, 콜라텍은 유흥업소로 분류되어 22시 운영제한, 무도장은 운영제한조치 없는 상황(대전시 건의)
- (서민경제 피해) 운영제한·집합금지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 가중
- (보상 요구) 손실보상 없는 시설 규제가 반복되는 데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 심화 및 수용성 저하

□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부족

- (방역 관리 미흡) 지난 1년간의 집단감염 분석 결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 등의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 등에 비해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 관리는 미흡하다는 문제 지적

<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중 비중('20.1.20~'21.1.19) >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교시설	신천지	직장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수	6,900명	5,791명	5,214	3,817명	4,406명
집단발생 중 비중	21%	17%	16%	11%	13%

- 사업장의 경우 업종 행태별 구분·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대규모 사업장(제조업, 육가공업 등) 중심으로 집단감염 지속 발생 중
- * '21.1월 이후 총 52건/1,362명(수도권 33건, 63%), 아산시 난방기공장, 남양주 제조업 등
- ** ①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②작업장 내 큰소리 대화로 비말발생(소음환경) 및 마스크 착용 미흡, ③외국인 직원 비중 높아 공동 기숙생활로 인한 노출 증가

< 언론보도 내용 >

- ▶ (이데일리) "집단감염은 교회서, 피해는 자영업자만"...또 거리두기 연장에 '분통' ('21.1.31)
- ▶ (MBN) "왜 자영업자만 못 살게하나" 거리두기 완화 기대한 자영업자 분노 ('21.1.31)
- ▶ (중앙일보) 공장·교회 등서 터진 집단감염...'3밀' 환경에 방역수칙도 어겨 ('21.2.20)

□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소통) 방역당국이 모든 시설·업종별 방역원칙을 수립 중이나, 대상시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관련 협회·단체 등과 소통 및 현장성 미흡
 - 대상시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세밀한 방역조치가 곤란하고, 업종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한계
 - * (예)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세부업종이 약 45종이나, 중수분·방대본이 모든 시설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수립하고, 의견수렴 하기에는 역부족
 - ** 자영업 단체 등에서 방역 조치에 대한 협의 및 의견수렴 구조를 지속 요청
- (협력) 각 부처의 소관 시설별 방역수칙 수립 및 관리 권한이 모호하여, 소관 중앙부처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주도적 역할 미흡
 - * 세부업종별로 현장을 반영한 정교한 방역수칙 수립 및 점검 등 활동 미흡

IV. 개편방안

□ 목표

-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구축

□ 추진 방향

- ① 거리두기 단계 재편을 통해 단계별 메시지 명확화를 위한 단계 간소화(5단계→4단계) 및 강화된 방역·의료역량을 반영한 기준 상향
- 지역 상황에 따른 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 ②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로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부담을 사회 전반의 방역책임으로 분산
- ③ 근거 기반 위험도 평가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체계적 재분류 및 형평성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개선
- ④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고 방역 조치가 미흡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⑤ 개인 활동과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책임성을 부여하고, 자율방역을 위한 이행수단 확보
- ⑥ 관계 부처, 지자체의 방역관리 참여 강화 및 협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공론과 숙의의 거버넌스 구축

목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 간소화 및 단계 조정 기준의 조정▶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형평성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개선▶ 위험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개인·시설의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V. 개선 방안

1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 ◆ 단계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행동 메시지 명확화, 확대·강화한 방역·의료 역량을 반영한 전환 기준의 조정

1 단계 구분 및 기준 조정

□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추진

- (단계) 위험성에 대한 메시지가 약했던 0.5단계 대신에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4단계 체계 도입
- (정의) 억제 단계(1단계), 지역 유행 단계(2단계), 권역 유행 단계(3단계), 대유행 단계(4단계)로 구분하여 유행의 성격에 따라 간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단계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대응 개요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 방역·의료체계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기준 상향 조정

- (기준) ①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②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③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 조정

*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 마련하여 5명(2단계), 10명(3단계), 20명(4단계) 이상일 때 단계 격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보조지표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 (예방접종 고려) 향후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기준의 추가 상향도 가능

- 현재 주평균 환자 1,000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 중이며, 7월 이후 위중증 환자 감소 등으로 약2,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중증환자 전담병상 수) >

권역	(현)병상기준 수용가능 중증환자 수	(현)중증환자 전담병상	3단계		4단계	
			단계 전환기준 확진자 수	필요병상 수	단계 전환기준 확진자 수	필요병상 수
수도권	653	466	500	218	1,000	397
충청권	91	65	110	46	220	85
호남권	71	51	100	43	200	79
경북권	71	51	100	43	200	78
경남권	139	99	160	66	320	121
강원	34	24	31	13	62	18
제주	11	8	13	5	27	24
전국	1,070	764	1,000	434	2,000	802

※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 비율 약 3%, 중환자실 평균 입원기간 20일로 산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전국	500^{미만}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51,853,861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5,925,799
서울	97 ^{미만}	97 ^{이상}	195 ^{이상}	389 ^{이상}	9,729,107
경기도	132 ^{미만}	132 ^{이상}	265 ^{이상}	530 ^{이상}	13,239,666
인천	30 ^{미만}	30 ^{이상}	59 ^{이상}	118 ^{이상}	2,957,026
충청권	55^{미만}	55^{이상}	110^{이상}	220^{이상}	5,543,161
대전	15 ^{미만}	15 ^{이상}	30 ^{이상}	59 ^{이상}	1,478,870
세종	3 ^{미만}	3 ^{이상}	7 ^{이상}	14 ^{이상}	340,575
충북	16 ^{미만}	16 ^{이상}	32 ^{이상}	64 ^{이상}	1,600,007
충남	21 ^{미만}	21 ^{이상}	42 ^{이상}	85 ^{이상}	2,123,709
호남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144,130
광주	15 ^{미만}	15 ^{이상}	29 ^{이상}	58 ^{이상}	1,456,468
전북	18 ^{미만}	18 ^{이상}	36 ^{이상}	73 ^{이상}	1,818,917
전남	19 ^{미만}	19 ^{이상}	37 ^{이상}	75 ^{이상}	1,868,745
경북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103,867
대구	24 ^{미만}	24 ^{이상}	49 ^{이상}	98 ^{이상}	2,438,031
경북	27 ^{미만}	27 ^{이상}	53 ^{이상}	107 ^{이상}	2,665,836
경남권	80^{미만}	80^{이상}	160^{이상}	320^{이상}	7,924,413
부산	34 ^{미만}	34 ^{이상}	68 ^{이상}	137 ^{이상}	3,413,841
울산	11 ^{미만}	11 ^{이상}	23 ^{이상}	46 ^{이상}	1,148,019
경남	34 ^{미만}	34 ^{이상}	67 ^{이상}	135 ^{이상}	3,362,553
강원	15^{미만}	15^{이상}	31^{이상}	62^{이상}	1,541,502
제주	7^{미만}	7^{이상}	13^{이상}	27^{이상}	670,989

* 중환자 현황 및 병상을 고려하여 단계별 격상기준을 마련

□ 단계 결정의 주체 및 체계

- (자율권 강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
 - 지자체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방역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방역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지역별 단계 조정 체계 운영
 -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 적용 가능
 - 단계 상향 조정은 신속하게 하되, 단계 하향 조정은 환자추세 지켜보며 신중하게 추진
 - * 시·군·구 단계 상향 시 반드시 시·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 및 중대본의 조치사항에 대한 협의 없이 단계 조정은 불가능
 - ** 지역별 단계 조정 시 학사일정 등 영향 고려하여 시·도 교육청과도 협의 권고

< 단계 조정 절차 >

- ▶ (시·도)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
 -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
 - ※ 긴급한 단계 상황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 ▶ (시·군·구) 시·도와 단계 조정 여부 협의 →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 → 시·도에서 중대본 **사후보고**

- 단계 조정에 따라 지자체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조치·영업 준비를 위해 **조정 최소 2일 전**에는 미리 발표하여 **충분한 준비 시간** 부여
 - * 다만, 학사일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시 학교에는 일정한 준비기간 부여하되,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결정 체계 >

단계구분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적용 지역	■ 시군구, 시도, 권역	■ 시군구, 시도, 권역	■ 시군구, 시도, 권역	■ 권역 또는 전국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2

단계별 대응개요 및 핵심메시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단계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대응개요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 1단계 (억제 단계)

- (정의) 지속적인 억제상태의 유지
-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대응 여력 이하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
- (기준) 지자체별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주평균 환자 수가 전국 519명 미만)에서 억제, 병상여력 충분하며 권역 기준 R 1 미만

< 지자체별 단계 조정 기준 :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250명 미만	55명 미만	50명 미만	50명 미만	80명 미만	15명 미만	7명 미만

- (주요 조치내용)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해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상시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 (결정 주체) 시·군·구, 시·도, 중대본

□ 2단계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단계)

- (정의) 지역 유행이 개시되어 인원 제한으로 밀집도 완화 필요
- (개념) 지역 내 방역·의료 대응이 한계에 도달하여, 권역·중앙의 협조가 필요한 수준으로 지역 유행이 개시
- (기준) 지자체별 인구 10만명 당 1명 이상(주평균 환자 수가 전국 519명 이상) 발생, 권역 기준 R 1 이상 유지 또는 상승

< 지자체별 단계 조정 기준 : 인구 10만명 당 1명 이상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250명 이상	55명 이상	50명 이상	50명 이상	80명 이상	15명 이상	7명 이상

- (주요 조치내용) △모임·이동·여행 등 자제, △사회활동 자제, △여가·오락 등 대면 활동 제한
- (결정 주체) 시·군·구, 시·도, 중대본

□ 3단계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단계)

- (정의)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되어, 모임 금지 조치 필요
- (개념) 권역별 방역·의료 대응 여력이 한계에 봉착하여 전국적인 방역·의료 자원의 동원이 필요한 수준으로 유행이 확대
- (기준) 지자체별 인구 10만명 당 2명 이상(주평균 환자 수가 전국 1,037명 이상) 발생,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소실 및 권역 기준 R 1 이상 유지 또는 상승

< 지자체별 단계 조정 기준 : 인구 10만명 당 2명 이상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500명 이상	110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이상	160명 이상	31명 이상	13명 이상

- (주요 조치내용)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 제한
- (결정 주체) 시·군·구, 시·도, 중대본

□ 4단계 (대유행 / 외출 금지 단계)

-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개념) 전국적으로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하여 대유행으로 확산
- (기준) 지자체별 인구 10만명 당 4명 이상(주평균 환자 수가 전국 2,074명 이상) 발생,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소실 및 전국 기준 R 1 이상 유지 또는 상승

< 지자체별 단계 조정 기준 : 인구 10만명 당 4명 이상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000명 이상	220명 이상	200명 이상	200명 이상	320명 이상	62명 이상	27명 이상

- (주요 조치내용)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外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 (결정 주체) 중대본

< 각 단계 및 전환 기준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적용 지역	■ 시군구, 시도, 권역	■ 시군구, 시도, 권역	■ 시군구, 시도, 권역	■ 권역 또는 전국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값), 감염경로 중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250명 미만 ▶ 인구 300만 지자체 : 30명 미만 ▶ 전국 : 50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250명 이상 ▶ 인구 300만 지자체 : 30명 이상 ▶ 전국 : 5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500명 이상 ▶ 인구 300만 지자체 : 60명 이상 ▶ 전국 : 1,0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1,000명 이상 ▶ 인구 300만 지자체 : 120명 이상 ▶ 전국 : 2,000명 이상
대응 개요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2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 ◆ 모임, 외출, 여행, 이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관리를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쏠 국민에게 분산

1

모임 · 만남 · 친목

□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 차단

< 사적모임의 범주 >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2단계 : 8명까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9인 이상 금지)
 - * 단,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완화 또는 해제)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2단계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돌잔치의 경우 2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하되, 최대 16인까지 허용
- (3단계 : 4명까지) 개인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5인 이상 금지)
- (4단계 : 18시이후 2명까지)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 추가 적용
 - * 4단계 18시 전까지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예외사항)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내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여가활동에 대한 단계별 행동 제한

- (외출) 2단계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3단계부터 22시 이후 외출을 자제하고, 4단계는 출퇴근 등 필수 활동 외 외출 자제
- (운동) 2단계는 실내 단체운동을 자제, 3단계는 실외 단체 운동 자제하고, 4단계는 개인 운동만 권장하여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 단계별 모임·만남·친목 제한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의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회적모임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회적모임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회적모임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방역수칙 준수	■ 실내 동호회 활동 자제	■ 동호회 활동 자제	
외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22시 이후 외출 자제	■ 출퇴근 등 외출 자제
운동	■ 방역수칙 준수	■ 실내 단체운동 자제	■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운동 자제	■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 활동 규제에 대한 해외사례 >

▶ 해외에서도 모임 참석 인원 등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조치 실행

구분	군중·모임 제한에 대한 조치사항
미국	▶ (비거주지 모임) 25인 → 10인 → 금지, (거주지 모임) 10인 → 금지 ▶ (미시시피) 실내 10명, 실외 50명 모임 제한 ('20.12.22.~) ▶ (하와이) 5명 모임 제한 ('21.1.16.~) ▶ (뉴욕) 10명 이내 모임제한 ('20.11.~)
독일	▶ (행사) 실내 20명, 실외 50명 ▶ (사적모임) 1가구+1명까지만 허용 * (적용기간) '21.1.24.~2.14까지 예정
스위스	▶ 5명 모임 제한('20.12.~)
네덜란드	▶ (가정) 1명 제한 ▶ (실외) 2명 모임 제한('21.1월~) * 기존 4명제한('20.10월)에서 강화된 조치
덴마크	▶ 공·사적 5명 모임 제한('21.1.5.~)
이스라엘	▶ 실내 5명, 실외 10명('21.1.5.~)
홍콩	▶ 2명 모임 제한('20.12.2.~) * 기존 4명 제한('20.9월)에서 강화된 조치
싱가포르	▶ 8명 모임 제한('20.12.28.~)

사적모임 관련 쟁점 검토 결과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중수본안 유지)** 3차 유행 차단에 사적 모임 금지가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을 토대로 **최소한의 관계 형성은 가능하되 불필요한 접촉은 차단하는 개편(안) 유지 필요**
 - * (대 국민 인식조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행차단에 효과적이었다(74.4%), 앞으로 유행 확산 시 사적모임을 금지해야한다(85.7%)
- **(기타 제안)** 경제부처(안)은 현행 대비 인원제한 규모가 커서, **제한의 의미가 약하고, 의료계(안)은 방역측면은 긍정적이나, 국민 불편 및 피로감은 과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편(안)을 추진**

□ 4단계에서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 제한 이유

- **(억제력 강화필요)** 4단계에서 4인까지 모임 허용 이외에,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 허용(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추가 적용**
 - 4단계 상황(환자 전국1500명이상)에 비해 시설 및 개인 활동에 대한 **억제력이 약한 상황***으로, **'불필요한 외출 금지'라는 강한 메시지 필요**
 - * 4단계는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에만 집합금지 적용되며, 다중이용시설 3그룹에 대한 21시 운영제한 적용이 추가되어 단계에 비해 억제력이 약한 상황
- **(18시 기준)**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의미의 조치**
 - * 해외사례 : (영국) 전역 봉쇄조치 시행 → 의료·교육·물품 구매 등 합리적 사유 없는 외출 금지
(프랑스) 야간통금시간 확대(20시~06시 → 18시~06시)
(일본) 20시 이후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 제한

- (행사)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2단계), 50명(3단계) 이상 금지로 밀집도 조정
 - 단계별 인원은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 적용

< 행사의 범주 >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별도수칙 적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 6㎡당 1명
 -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하되, 2단계부터 최대 수용인원 5천명까지 허용
 -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 (예외적용)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거나,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활동 및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집회)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1단계), 100명(2단계), 50명(3단계) 이상 금지하고, 4단계는 1인 시위 외 금지
 - 다만, 지자체별 방역대응 체계를 고려시, 집회·시위가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강화된 조치 적용 가능하도록 자율권 부여
- (시험) 자격증, 채용 등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 배치 및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하고, 시험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자 통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의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 방역수칙 준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 시험종사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향후 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예외적용 검토

- (예외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
- (방역수칙 완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방안 검토

행사·집회 관련 쟁점 검토 결과

□ 행사와 집회를 동일한 인원 기준으로 제한하는 이유

- (기본권) 집회·시위는 ①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기본권인 점, ②지자체 및 생활방역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동일한 제한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회와 행사는 동일한 인원 제한이 타당하다고 판단
- (지자체 자율 강화) 지자체별 방역대응 체계를 고려시, 집회·시위가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강화된 조치 적용 가능하도록 자율권 부여

< 행사 구분 >

인원 제한 대상 행사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행사 수칙 예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 축제(ex. 벚꽃축제) - 특산물 축제(ex. 머드축제, 한우축제, 딸기축제 등) ▲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설명회, 재건축 설명회, 입시 설명회 ▲ 공청회 ▲ 토론회 ▲ 국가 기념일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일절, 광복절 행사 등 - 수산인의 날, 물의 날, 독도의 날, 장애인의 날, 순국선열의 날 바다식목일 등 ▲ 기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립기념식, 상장 기념식, 준공식, 출판기념식, 현판식, 임명식, 시상식 등 ▲ 수련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연수 - 부서 워크숍 등 ▲ 사인회 ▲ 강연 ▲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대회(ex.레저대회, 마라톤대회, 유소년 야구대회, 수상스포츠 체험 교실, 생활체육대축전) - 경연 대회(ex.전국국악 경연대회, 댄싱페스티벌) - 전국 클럽 대항 대회 등 ▲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박람회 ▲ 국제회의·학술행사 ▲ 대규모 콘서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정기 주주총회 ▲ 국회 회의 ▲ 방송 제작·송출 등

<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 >

구분 (단계명칭)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 모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개 인 활 동	모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외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2시 이후 외출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출 자제
	애 니 머 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단체운동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인 이상 행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인 이상 행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금지
	집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인 이상 집회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인 이상 집회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인 이상 집회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3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 ◆ 다중이용시설은 슈퍼 전파(superspread)의 예방, 감염발생시 밀접 접촉의 규모 최소화,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이 차단되도록 관리 강화

1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 재분류

□ 전문가 등의 근거 기반 위험도 평가

- (위험도 평가) 시설 내 활동의 특성, 감염 발생빈도, 역학 특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실시
 -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33인)의 자문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1그룹, 2그룹, 3그룹 선정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기준 >

구분	위험도 평가 주요 내용
전파 위험도	△활동의 비말발생 여부, △체류시간의 정도(1시간), △밀폐된 공간, △밀집도, △공용 물품공간의 공유, △취식 여부
관리 가능성	△상시 마스크 착용 가능여부, △감염발생시 추적관리(tracing) 가능여부, △관리인력 및체계 작동 여부
필수 서비스	△가장 고강도 단계에서도 운영이 필요한 서비스인지 여부

□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재분류

- (체계적 재분류)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
 - * 이용시간의 제한, 동시간대 이용 인원 제한을 통한 밀집도 관리 강화, 집중점검 및 관리 강화, 마스크 상시착용(음식섭취 금지), 출입자명부 관리 및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소독 등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편·홀덤편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다중이용시설 그룹 재분류 관련 쟁점 검토 결과

□ 일부 시설에 대한 그룹 재분류 요청

- **(노래연습장)** 실질적으로 80~90% 이상이 술판매, 접객원(불법영업)을 두고 있으므로 단란주점과 같은 1그룹으로 재분류
- **(PC방)** 대부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등 위험도가 낮으므로 2그룹→3그룹으로 재분류
- **(카지노)** 영업 환경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시행 중이며, 감염 사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그룹→3그룹으로 재분류
-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시설과 같은 1그룹 분류에 해당하는 방역 위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2그룹 또는 3그룹으로 재분류

□ PC방, 카지노,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그룹 재분류 수용

- **(노래연습장 불수용)** 주류 판매 및 접객원 고용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방역과 무관한 단속이 필요하며, 불법 영업행태를 고려하여 시설 그룹 재분류는 곤란
- **(PC방 수용)** 장시간 체류라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수칙을 추가하여 3그룹으로 재분류 수용
- **(카지노 수용)** 현재 주류 및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 있는 점, 지정된 장소에서 물·무알콜 음료 섭취하는 점에 따라 마스크 지속 착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3그룹으로 재분류 수용
- **(직접판매홍보관 수용)** 기본방역수칙으로 음식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 부르기 금지하고 있으므로 2그룹 재분류 수용

2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의 원칙

□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중심 제한

- (이용인원 제한)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m²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이용 가능 인원 명시

* 식당·카페의 경우 1단계부터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의 제한>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6m²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예: 6m² → 8m²당 1명) (좌석 30% 또는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시 			

- (운영시간 제한) 단계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운영시간 제한 적용

- (2단계 : 24시)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적용

* 다만, 지역별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고,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 가능

- (3단계 : 22시)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1그룹 및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

※ 다만,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은 22시 운영 제한 적용하지 않되, 아래의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방역수칙을 필수적으로 준수

< 22시 제한 예외 적용을 위한 위험도 제거 방역수칙 >

구분	22시 제한 완화를 위한 위험도 제거 방역수칙
탁구장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수영장은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이 어려워 22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

- (4단계 : 22시)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금지,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 제한 적용

< 단계별 운영시간 제한 >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그룹 22시 제한 * 2그룹 일부 예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 3그룹 22시 제한

- (집합금지)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집합금지 적용

* 주류 판매와 이용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교차 감염발생이 높은 시설

< 단계별 집합금지 내용 >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운영시간 제한 관련 쟁점 검토 결과

□ 22시 운영시간 제한 이유

- (수용성 측면) 이미 운영 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다시 21시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음
 - * 대국민 인식조사('21.3월)에서도 적절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22시(47.7%)로 나타남(21시 25.5%)
- (과도한 규제) 1시간 운영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방역효과 대비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더 크므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 (의견수렴) 생방위는 21시 제한 의견이 우세(8명/13명)하나, 지자체는 22시 제한 의견이 우세(11개/17개), 일부 국회 및 관계부처에서 현재 시행 중인 22시를 개편(안)에도 적용하자는 의견 제시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대상 2단계 24시 운영 제한하되, 지자체 자율에 따라 해제 가능 조치 추가

- 2단계 조치가 인원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외 별도 강화된 조치가 없어, 24시 제한을 추가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다만, 지역별 유행 상황 등 지역 방역 대응 체계를 고려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할 수 있게 하여 자율과 책임 부여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

구분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모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다중이용 시설 (상업/서비스/국공립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등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예: 시설면적 6㎡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예: 6㎡ →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예: 6㎡ →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예: 6㎡ →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 3그룹 22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강화**

- (기본수칙)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은 감소
- (대상확대) 기존 체계의 24종 시설에 9개* 시설 추가 적용 및 기존 시설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

*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마사지업·안마소

< 분류 세분화 >

기존	개편
실내 체육시설	고강도 실내체육(고강도 GX류/탁구, 배드민턴 등)
학원·직업훈련기관	중저강도 실내체육(스크린 골프장/야구장/ 당구장/볼링장/겨루기 류 등) 일반 / 노래, 관악기, 연기 / 기숙형 학원

- (수칙강화) 음식섭취 목적시설 등 외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수칙 추가

종전 기본수칙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시설별 수칙)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마스크 벗기, 비말 발생 등)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을 마련
- 모든 출입자(대표자만 작성 불가)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하여 감염 발생에 대비한 방역 관리 강화
-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마스크 벗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와 상관없이 영화관·공연장은 음식물 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시 응원·음식물 섭취 금지 등 시설별 기본수칙을 강화

< 시설 공통방역수칙 >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 한 칸 띄우기 또는 일행 간 한칸 띄우기 /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등
-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 (1그룹)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은(△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 (유흥시설) 유흥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에 대한 일부 제한
 - (홀덤펍)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1m 거리두기), 딜러 및 플레이어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 권고
 - (콜라텍·무도장) 음식섭취 금지, 무도행위 중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다른 무도행위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 (2그룹) 식당·카페 등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등)
 - (노래연습장)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이용종료 직후 공용물품 소독 및 마이크 덮개 교체
 - (식당·카페)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뷔페는 공용식기·대기자 관리 철저, 2인 이상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 시 1시간 이내 이용 권고
 - (목욕장업)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자제
 -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음식 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등,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섭취, 실내흡연 금지

○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카지노, △PC방 등)

- (영화관·공연장) 기립·함성·구호·합창 등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고 좌석이 없는 경우 좌석배치하여 운영,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 (학원) 노래부르기 및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파트너와 춤을 추는 경우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결혼식·장례식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뷔페식당에 대한 관리 철저, 지인 간 신체 접촉(악수 등) 자제
- (이미용업)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좌석 간 또는 베드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 및 탈의실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대기 줄을 서거나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간격 유지하도록 바닥에 표시
- (오락실·멀티방) 음식섭취 금지하고, 멀티방은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실시
-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상시착용 및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준수
- (카지노)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한 칸씩 띄어 앉기
- (PC방)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섭취 금지,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 다중이용시설 그룹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시설은
 - (스포츠 관람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및 합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 (경륜·경정·경마장) 음식섭취 금지 및 합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 (박물관·미술관) 전시공간에서 음식섭취 금지, 줄설 때 1m 거리두기
 -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으로 제한, 개인물품 사용 권고
 -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 (전시회·박람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사전등록제,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일시에 한 장소에 사람이 집중될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 등 자제, 개인별 식사로 제공, 뷔페제공 금지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
 - (파티룸) 음식섭취 시 공용식기·대기자 관리 철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도서관) 휴게실 등 별도 섭취 공간 마련 시 음식섭취 가능, 단체견학 자제
 - (키즈카페) 대기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간격 유지하도록 바닥에 표시, 놀이기구 및 장난감 소독 철저
 - (마사지업·안마소)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착용할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 (종교시설) 성가대(1인 예외),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공용물품 사용금지
- (예외검토)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기본방역수칙 완화 검토
 -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응원·합성, 스탠딩 공연 등 운영 검토

□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지속

- (운영 필수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시설의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경로당과 같이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가 방역관리자로 활동

<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종류 >

구분	시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 마스크의 상시착용 원칙, 비말 발생 활동의 가급적 자제(노래교실 등), 시설의 밀집도 조절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 필요
 -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통합 기능 회복
- (주민센터)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하여 사회관계망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적극 운영

< 단계별 이용 예시 >

1단계 (역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말 발생 활동(노래, 춤 등)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 권고 ■ 이용인원 자율 조정(지자체 및 시설 판단) ■ 칸막이 설치, 띄워 앉기, 대화 금지 전제하 식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말 발생 활동(노래, 춤 등) 금지 ■ 칸막이 설치, 띄워 앉기, 대화 금지 전제하 식당 운영 하되 대체식 제공 또는 도시락 전달 등 비대면 권장 ■ 이용정원 50% 이하로 프로그램 운영 	

- ◆ 사업장·종교시설·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를 통해 방역 취약 환경 개선 및 집단감염 차단

1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 기업(사업장)별 방역수칙 수립·관리 및 표본 선제검사 실시

- (특성 고려) 사업장별 특성(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에 맞게 방역수칙 정밀화
 - (3밀 작업장) 냉·난방 시설운영 등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 착용
 - * 기계환기 시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
 - (공동생활공간)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교육*하고, 기숙사 이용인원을 최소화**, 주기적 검사·증상발현 시 즉시 검사 실시
 - *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방역지침을 모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
 - ** 1인 1실 배정하되, 다인실의 경우 3단계 한 칸 띄우기, 4단계 배정인원 1/3 권고
 - (구내식당)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 (고위험 관리)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 발굴하여 표본 선제검사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 재분류*하여 방역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기숙형 시설, 물류센터, 콜센터 등
 - 연중 사업장 감독을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 연계

< 외국인 근로자 다수 근로 사업장 내 공동생활공간 관리 지침 >

- 기숙사 공간에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하고, 방역지침 마련
- 기숙사 이용자(관리인 포함) 교육을 통해 방역지침 전파
 - *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방역지침을 모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 필요
- 기숙사 입소 전 근로자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증상)확인
- 기숙사 이용 인원을 최소화하여 가급적 1인 1실을 배정,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원 배정
 - 다인실은 3단계부터 한 칸 띄우기, 4단계부터는 배정인원 1/3 권고
 - ※ 불가한 경우에는 주기적(월1회이상) PCR 검사 권고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C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매일 확인
 -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고, 결과 통보 시까지 1인 1실에 배정
- 기숙사 내 공용공간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동 시간대 다수 이용 및 대화 자제
- 기숙사 내 이동(지인 방 방문 등) 및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기숙사 및 공용공간 주기적 소독 및 매일 2회 이상 환기
- 기숙사 식당 이용 시 일렬 또는 지그재그 착석, 식사 전 손 소독제(또는 비닐장갑) 사용

□ 시차 출퇴근제 등 활성화

- (제도 활성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여 동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 단계별 사업장 관리 강화 >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권고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10% 재택근무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20% 재택근무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30% 재택근무 권고

□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강화

- (방역수칙 강화)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단계 성가대·찬양팀(1인제외)·큰소리 기도 등 금지
 - * 1단계 수용인원 50%(좌석 한칸띄우기),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실외행사는 '행사' 기준* 준용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2~3단계 허용
 - * 1단계 500명(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승인),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 ** 큰 소리로 함께 소리치거나 노래하는 행위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 단,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 (예시) 노숙인·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봉사, 저소득층 학생 대상 공부방 운영(단, 교리·성경 공부 등 종교 관련 학습은 제외) 등

< 단계별 종교시설 관리 강화 >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50%	■ 전체 수용인원의 30%	■ 전체 수용인원의 20%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체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 통성기도 금지			

- (개별규제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규제 강화 가능
- (예외적용)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종단소속 외 종교시설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방역 관리

- (사각지대 관리) 종단소속 외 종교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 활동 중(경찰청)으로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속 관리
 - 미인가 종교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시설 또는 학원 방역수칙 적용하여 관리
 - * 점검팀·분석팀 구성하여 공공안녕의 위험요소 점검(1.4~),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점검 활동(2.13~)

□ 감염취약 환경, 입소자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예방 대책 추진

- (기본수칙 강화)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 선제검사, 외부인 출입 통제 등 감염취약 환경을 고려한 기본 방역수칙 강화

【의료기관 개설자 방역수칙】

- ① 종사자(간병인 포함) 선제적 진단검사 시행 및 이행결과 점검 철저
- ②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자명부 관리 등 철저
- ③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출근 금지)
- ④ 출·퇴근 또는 근무 중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 확인(1일 2회 이상)
- ⑤ 입원실 내 환기 기준 준수(시간당 6회 이상 순환 권고)
- ⑥ 대면회의 자제, 층별·병동별 근무 분리 및 공용공간 분리 사용

- (선제검사) 종사자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휴가·외출 후 복귀자, 고위험지역·시설 방문자, 유증상자 등에 대한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은 3단계부터 주1회 PCR검사를 실시하고, 요양병원·시설은 2단계부터 2주 1회 실시
 -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면회) 외부에서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접촉 면회 허용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환자당 1명의 지정된 보호자만 입출입 허용(권고)
 - 요양병원·시설은 면회객, 입원 환자 들 중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1~3단계 접촉 면회 허용
 - *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 착용 후 면회 실시
 - 백신 미접종자로 임종시기·중증환자·주치의가 인정하는 환자는 일정 요건*하에 접촉 면회를 실시
 - * 개인보호구(KF94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 등) 착용 및 24시간 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 단계별 의료기관 등 방역수칙 >

기관 구분	단계구분 (단계명)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방역 수칙	방역수칙 준수 의무			
	종사자 선제검사 (PCR)	자체 판단	2주 1회 (시·도 판단)	주 1회 (시·도 판단)	주 1회
	면회	입원환자 보호자 :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지정된 보호자는 최근 72시간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음성판정된 인원(보건소 등에서 검사실시 음성판정 후 지정). 입원실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 외 이용자체			
		외래환자 보호자 : 진료 이용시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 1인만 출입,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 이용 자체			
점검	사전 예방 체계 강화	일상적 점검	방역관리 특별점검		
요양 병원·시설	방역 수칙	방역수칙 준수 의무			
	종사자 선제검사 (PCR)	지자체 판단 (지역 요양시설내 발생상황고려)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면회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테블릿 PC 등 영상 방식 권장)
	점검	사전 예방 체계 강화	일상적 점검	방역관리 특별점검	

* 개설자가 방역수칙준수 위반으로 코로나19 다수 발생(확산)하는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자율과 책임 강화)

** 다만, 요양병원 면회 시 제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 면회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은 해당사항 없음

□ 교정시설 방역 관리 강화

- (신규입소자 관리 강화) 입소 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수용자 2주 독거격리 후 해제 전 PCR검사 실시
 - PCR 음성수용자 간 2주간 추가 혼거격리를 통해 무증상 입소자 원천 차단(총 4주 격리)
- (종사자 방역 강화) 교정시설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부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검사 실시
- (방역훈련 실시) 교정시설별 매월 1회 매뉴얼에 따른 방역훈련 실시 후, 문제점 등에 대한 매뉴얼 보완을 통해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

□ 노숙인 등 복지시설 방역 예방 및 지속적 관리 강화

- (공통사항) 1일 2회 발열체크,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자원봉사자,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
 - (노숙인 생활시설) 일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현장점검 실시, 지자체별 생활시설 예방적 감염관리 등 중점 대책 실시
 - (노숙인 이용시설) 공공지원 급식량 확대(지자체 추정·중앙 공동모금회 지원), 현장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강화
 - *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전국 1,362곳)을 중심으로 발열 증상 여부 등 예방수칙 이행 여부 파악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거리이동 최소화 등 교육 안내(1일 2회, 오전/오후)
- (의료) 보건소 및 노숙인진료시설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노숙인 결핵건강검진 연계
 - * 결핵검진시 기침 등 유증상자 코로나19 선별검사 실시, 거리노숙인 증가 대비 현장보호활동 강화 및 시설입소 전 선제적 선별검사 실시로 감염예방 강화
- (그외 물품지원 및 후원금 연계) 노숙인시설 등 방한·방역물품(손 소독제, 마스크) 및 무료급식비 후원 및 각 지자체별 추가 후원연계 등 지원

5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 확보

◆ 페널티,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방역 관리·실천의 실효성 제고

□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 강화

- (생활지원금)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3.29)
-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 적극 행사 권고
 - 법무부 중심으로 중앙부처·지자체 간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구상권 청구기준 및 매뉴얼 마련 필요 (법무부)

□ 지역별 관리·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지자체 자율강화) 시·군·구별로 지역 감염상황에 따라 위반 업종 등에 대한 자체적 방역 조치 및 관리 인정
 - * (대구시 사례) 노래연습장 집단감염 발생 및 도우미 QR코드 이행 미흡에 따라, 대구시 노래연습장업 1,602개소에 대해 열흘간(21.1.21~1.31) 집합금지 조치
-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핀셋 방역을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상제외)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공고 제2021-6호)에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제외 및 지급된 경우 환수 명시 (1.6, 중기부)
 -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문에 보상제외 명시 (고용부)

무관용 원칙 등 적용 권고지침

-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한 권고지침 마련 (중수본 방역총괄팀)

【기본원칙】

- 집단감염 발생 장소 중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 처분권자(지자체)의 처분재량권을 존중하고, 지자체별 처분편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처분 대상 중심으로 기준 제시

① 과태료 처분 및 고발(벌금)

* (과태료) 영업자 300만원 이하, 개인 1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 (과태료) 1차 위반시 경고·계도, 2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원칙

- 다만 ①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③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 적극적 과태료 처분 실시

- (벌금(집합금지,영업금지 위반)) 감염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적극적 고발조치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 ①이용인원 준수, ②영업시간 준수,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④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 (이용자) ①마스크 착용

※ 시설종류별 핵심방역 수칙 별도 추가(무관용 원칙 등 적용 권고지침 참고)

② 집합금지 또는 영업정지 조치

- (집합금지) 아래 사항으로 감염우려가 높은 경우 적극적 집합금지 처분 실시

- ①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②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③기본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3.26~4.16 입법예고 중) 후 적용

* (현행) 경고 →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개선)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 협회·단체 중심의 자율방역 강화

- (자율방역)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의 자율적 방역 점검 및 관리체계 운영
- (인센티브) 협회·단체 및 관계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방역 점검·관리 상황을 공유하고,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 예)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에 식품진흥기금 통해 자금융자 등 지원

□ 자율과 책임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강화

- (캠페인) 단계별 대국민 행동요령 및 활동·시설별 방역수칙 홍보, 방역 관리 모범 시설을 선정하여 우수 사례 소개
- (방역지원 확대) 식당·카페 등 식품업소에 칸막이 등 위생·방역 물품 지원, 손 세척 등 위생설비 설치 지원(식약처)

□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 (모임·다중이용시설) 7~9월 고령층 접종완료 및 일반 국민 접종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자 대상 방역수칙 완화 검토
 - 직계가족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방안 검토 예정
 -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기본방역수칙 완화* 등 예외 적용방안 검토 예정
 - * 예방접종 증명 시 상영관, 스포츠 관람석 내 음식 섭취 금지 예외 적용 등 검토
- (복지·종교활동)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 복지관·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및 종교활동 방역수칙 예외 적용
 -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2단계 조치 완화) 지자체별 예방접종률(ex. 70% 이상)을 고려하여 사적모임(8인 제한), 24시 운영 제한(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해지 가능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방안 >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사적모임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 미포함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 미포함
	-	사적모임 제한 인원 미포함
행사·집회	-	행사·집회 제한 인원 미포함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
실내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
	-	(검토예정) 완료자 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 등에서 음식섭취, 응원·합성, 스탠딩공연 허용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 미포함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 미포함
	-	완료자 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요양병원·시설	-	1~3단계 면회객, 입원 환자 들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 방역당국, 관계 부처, 지자체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협회·단체와의 공식적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의견수렴 구조를 확대

□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 (관계부처의 책임성 강화) 방역당국은 방역의 대원칙 확립하고, 각 부처는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점검하여 방역 관리체계 운영
 - ※ 중수본·방대본이 마련한 기본방역수칙으로 각 부처가 소관시설을 관리
 - 각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소관 부처가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방역 관리 방안 마련 등 점검을 강화하고, 중대본에 보고하는 등 주도적 역할 추진 필요
- (자유업 방역관리 강화)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파악된 자유업에 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를 지정
 - 지자체는 유사 업종 파악 시 기본방역수칙을 토대로 최대한 적용하고, 적극적인 관리·점검 실시

□ 단계 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확대

- (참여 확대) 생활방역위원회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하여 단계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
 - *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 분야 2명 추가(21.4월)하여 민간위원장 포함 20인으로 구성(공동위원장 2, 의약계 7, 인문사회경제학계 5, 시민사회대표 2, 소상공인대표 2, 정부 2)
- (소통 강화)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 추진

□ 정밀방역을 위한 근거 확보

- (중수본) 이동량 분석, 정기적 여론조사를 통해 방역 효과성, 국민 인식 등 추이 분석
- (방대본) 역학조사에 대한 심층분석 체계를 마련하여 확진자 접촉과 집단감염 사이의 세부적인 접촉 장소 파악 등 방역수칙 조정의 근거 데이터 확보 필요

VI. 향후 계획

□ 개편 시행 시기 및 적용 방안

- (시행시기) 7.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 진행
 -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시범적용 확대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는 점 등 고려하여 7.1일 시행
- (적용방안)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 (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 가능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

<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실행방안 >

	현행 조치	이행기간	개편(안) 전면시행
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등 후속 발표 일정

- (후속 발표)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
 -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보고 후 발표 예정

1 1단계**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으로 전국 519명 미만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기본)
-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 가능
-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행사개최 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 필요, 집회의 경우 500명 이상 집회·시위 금지
-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7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형시설 홀덤펍·홀덤펍게임장	▶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콜라텍·무도장	▶ 시설면적 8㎡당 1명
2그룹	식당·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6㎡당 1명
	목욕장업	▶ 시설면적 6㎡당 1명 ▶ 수면실 이용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 시설면적 6㎡당 1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6㎡당 1명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6㎡당 1명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공연장	▶ 좌석 띄우기 없음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당 1명 ▶ 빈소별 4㎡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미용업	▶ 시설면적 6㎡당 1명
	유원시설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워터파크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6㎡당 1명
	상점·마트·백화점	▶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PC방	▶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파티룸		▶ 시설면적 6㎡당 1명
키즈카페		▶ 시설면적 4㎡당 1명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19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홀덤펍게임장, 콜라텍·무도장(1그룹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운영 제한 * 포장·배달만 허용
 - 다만, 지자체별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 가능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 ④ 예방접종 완료자

-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합성·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직장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 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콜라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4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 권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등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마트·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건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칩객행사 금지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경륜·경마·경정장	▶ 수용인원의 30%
	미술관·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등 금지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홀덤펍게임장, 콜라텍·무도장(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세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직장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 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콜라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마트·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경륜·경마·경정장	▶ 수용인원의 20%
	미술관·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등 금지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펍게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무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카페(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p>▶ 22시 이후 운영 제한</p>
	독서실·스터디카페	<p>▶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p> <p>▶ 22시 이후 운영 제한</p>
	영화관·공연장	<p>▶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p> <p>▶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p> <p>▶ 22시 이후 운영 제한</p>
	결혼식장 장례식장	<p>▶ 친족만 허용</p> <p>▶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미용업	<p>▶ 시설면적 8㎡당 1명</p> <p>▶ 22시 이후 운영 제한</p>
	유원시설	<p>▶ 수용인원의 50%</p> <p>▶ 22시 이후 운영 제한</p>
	워터파크	<p>▶ 수용인원의 30%</p> <p>▶ 22시 이후 운영 제한</p>
	오락실·멀티방	<p>▶ 시설면적 8㎡당 1명</p> <p>▶ 22시 이후 운영 제한</p>
	상점·마트·백화점	<p>▶ 출입자 발열체크</p> <p>▶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p> <p>▶ 22시 이후 운영 제한</p>
	카지노(내국인)	<p>▶ 수용인원의 30%</p> <p>▶ 22시 이후 운영 제한</p>
	PC방	<p>▶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p> <p>▶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p> <p>▶ 22시 이후 운영 제한</p>
기타	경륜·경마·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p>▶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p> <p>▶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p> <p>▶ 전 객실의 2/3 운영</p>
	파티룸	<p>▶ 시설면적 8㎡당 1명</p> <p>▶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등 금지</p>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적용 지역	■ 시군구, 시도, 권역	■ 시군구, 시도, 권역	■ 시군구, 시도, 권역	■ 권역 또는 전국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p>■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값), 감염경로 중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p>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250명 미만 ▶ 인구 300만 지자체 : 30명 미만 ▶ 전국 : 50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250명 이상 ▶ 인구 300만 지자체 : 30명 이상 ▶ 전국 : 5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500명 이상 ▶ 인구 300만 지자체 : 60명 이상 ▶ 전국 : 1,0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 1,000명 이상 ▶ 인구 300만 지자체 : 120명 이상 ▶ 전국 : 2,000명 이상
대응 개요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 모임 금지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 >

구분 (단계명칭)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모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개 인 활 동	모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외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22시 이후 외출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출퇴근 등 외출 자제
	애 니 머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단체운동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행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금지
	집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집회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 ■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

구분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모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다중이용 시설 (상업/서비스/국공립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방역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등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예: 시설면적 6㎡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예: 6㎡ →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예: 6㎡ →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원 제한 (예: 6㎡ →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 3그룹 22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추진방안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상시 착용(1~4단계) ■ 고정된 아크릴판 앞에서 노래 부르기(1~4단계)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1~3단계)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24시이후 운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콜라텍 무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상시 착용(1~4단계) ■ 음식 섭취, 소리지르기 등 비밀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1~4단계) ■ 시설면적 8㎡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24시이후 운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홀덤편·홀덤편 게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공용물품 이용하는 경우 손소독 또는 장갑 착용(1~4단계)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24시이후 운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식당·카페 (일반음식, 휴게,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 음식 먹는 경우 외에는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착용(1~4단계) ■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음악소리 대화가 들릴 정도 유지(1~4단계)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공용집계, 접시, 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유지(1~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음식 섭취 금지 (1~4단계) ■ 개별 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 시설면적 6㎡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24시이후 운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음식섭취 금지 및 발한실탕에서 대화 자제(1~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면실 운영금지(2~4단계),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2m 거리두기) ■공용물품(드라이어, 빗 등) 사용 자제(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 체육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샤워실에서 한칸 띄워 사용(3단계~4단계 : 수영장 외 샤워실 사용금지) ■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 물품 소독하기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제한x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제한x - 수영은 2시 운영제한 적용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자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시이후 운영제한
방매이벤트관 직접판매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제공·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 금지(1~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22시이후 운영제한
영화관·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온라인예매자는 제외)(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울 튀는 행위(떼창,육성응원 등)금지(1~4단계) 			
	■좌석 띄우기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22시이후 운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지정구역 외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22시이후 운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지정구역 외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독서실·스터디 카페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식당, 뷔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8인 이상 테이블은 4인단위 칸막이 설치,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1~4단계)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음식 먹는 경우 외에는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착용(1~4단계)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1~4단계)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종사자 대화 자제(면도, 메이크업 등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1~4단계)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운영시간 제한x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 이용 전,후 손소독 하기(1~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설 때 사람 간 1m 간격두기(1~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인원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70%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금지,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줄설 때 사람 간 1m 간격두기(1~4단계) ■ 샤워실에서 한칸 띄워 사용(1~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인원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50%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멀티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1~4단계)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건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이용자 간 2m(최소1m)유지,밀집도 높은 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로 분산 1m거리두기 불가 판단 시 지자체장은 2단계 방역조치 취할 수 있음(1~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1~4단계) ■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 (1~4단계)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30%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1~4단계) ■ 음식섭취 금지 (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1~4단계)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운영시간 제한x ■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 (관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1~4단계)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합성·응원금지(1~4단계)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1~4단계) ■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실외)수용인원의 70% 			
경륜장 경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1~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경마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합성응원 금지(1~4단계)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전시공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출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1~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사전예약시스템 미설치 기관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안내)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 체육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음식물 섭취 금지(1~4단계) 출설 때 사람 간 1m 거리 두기(1~4단계)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숙박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2~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룸 (공간 대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파티 목적 제공, 이용 등 금지(2~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1~4단계)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 단체견학 자제(1~4단계)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대기 줄을 서는 경우 최소1m 간격 바닥에 표시(1~4단계)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돌잔치 전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2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2단계) 3단계 및 4단계는 사적모임 금지 원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단계) 4명까지, 모임 가능 (4단계)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2단계) 착석 후 테이블 간 이동자제, 식사 시 대화 및 신체접촉 자제(1~2단계)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돌잔치 단위 면적 4㎡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 당 1명 	
전시회·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 섭취 금지 (1~4단계) 출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1~4단계) 시설면적 4㎡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종사자 대화 자제(얼굴관리 등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 (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학술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1~4단계) 사전등록제 운영(1~4단계) 좌석한칸띄우기 또는 좌석간1m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두칸띄우기 또는 좌석간2m거리두기(2~4단계) 		
의료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회시간 제한 주기적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회시간 제한 정기 선제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면회 금지(3~4단계) 정기 선제 검사 실시(3~4단계) 	
요양병원 요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1~3단계) 지자체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실시(2~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면회 금지
종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금지(2~4단계), 성가대·찬양대(1인 예외),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1~4단계) 공용물품(책 등) 사용금지(1~4단계)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금지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봉사를 전제로 한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운영 가능(단계별 운영 가능 규모 지자체 결정) 			